

대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규정

제정 2015.03.20

1차 개정 2018.06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” 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10조 및 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 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5조에 의거 대학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(논술 및 필답고사, 면접 및 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 및 실험고사,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등)를 대상으로 하되, 실기고사(예체능)는 예외적으로 적용에서 배제한다.

제3조(설치)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 <개정 2018.6.1.>

제4조(구성)

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본교의 교직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임기)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
2.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기타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(시기) 매년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비밀유지)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